

Procedures to apply for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sup>P1</sup>

##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VDP”) 신청 절차

재무부장관은 2021년 12월 23일자로 HPP Law<sup>1</sup>에 따른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VDP)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No. PMK-196<sup>2</sup> 규정을 발효하였습니다.

HPP Law는 두 종류의 VD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VDP I –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TA)에 참여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1985-2015년 기간 중 취득한 순자산 중 조세사면제도에 미신고된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VDP II – 개인납세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2016-2020년 기간 중 취득한 순자산 중 납세자의 2020년 연간소득세 신고서 상 미신고 되었으나 납세자가 2020년말 기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동 VDP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난 Tax Flash No.20/2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Tax Flash는 PMK-196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만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sup>1</sup> MoF Regulation No.196/PMK.03/2021 (PMK-196) dated and effective from 23 December 2021

<sup>2</sup> Law No.7 Year 2021 concerning Harmonisation of Tax Regulations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HPP*)

## 신고 절차

### 미신고된 자산가액의 계산

####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 가능 부채

VDP 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되지 않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금액의 원금을 포함합니다. PMK-196 에 첨부된 VDP I 서식 지침에 따라 최종 소득세를 계산할 목적의 부채 가액은 VDP I 에 따른 추가 자산 가치의 50%(개인납세자)와 75%(법인납세자)로 제한됩니다. VDP II 의 경우 전체 부채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화 표기 자산의 환율 적용

신고되지 않은 자산이 외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산 공시 서한(Surat Pemberitahuan Pengungkapan Harta/SPPH)에 적용되는 환율은 해당 납세자의 사업연도 말 기준 환율입니다. VDP I 의 경우 2015 년말, VDP II 의 경우 2020 년도 말 환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VDP II 참여자의 조세불복 절차

#### 납세자는 특정 조세불복에 대하여 적용을 받지 않음

PMK-196 은 다음과 같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2016 년 - 2020 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사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예비적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개시 통보레터(Tax Audit Notification Letter (Surat Perintah Pemeriksaan))가 납세자나 납세자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 b. 조세범 조사 – 경찰 조사관이 검찰에 수사 착수 통지 시;
- c. 조세범에 대한 공소의 제기 – 검사가 해당 조세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한 경우

#### 진행중인 조세 쟁송 절차의 철회

VDP II 신청자는 반드시 조세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쟁송 절차를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에 대한 진술은 자산 공시 서한(SPPH)상에서 해당 내용을 체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 경우 국세청(DGT)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세불복,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공식 취소 요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SPPH 에 대한 승인(Surat Keterangan/"SK")이 발행된 경우 납세자는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DGT 는 진행중인 법적 절차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SK 를 취소합니다.

## 최종 소득세 납부

최종 소득세 납부는 Tax Account Code No. 411128 및 납부 유형(VDP 종류, 수정으로 인한 과소납부 등)에 따라 Deposit Code가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Perception Bank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SPPH 의 최초 신고, 수정신고 및 철회

납세자는 SPPH를 신고하고 관련한 수정사항이나 철회신청서 제출을 DGT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이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SPPH의 신고 또는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최종소득세액 과소납부에 대해서는 SPPH가 신고되는 시점에 반드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해 발생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 시 환급되거나 이월납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송환 또는 적격 재투자에 대한 진술서, 진행 중인 모든 조세 정송 프로세스의 철회에 대한 진술이 SPPH 양식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SPPH 제출은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SK를 발행합니다. SPPH 수정신고에 대해 발행된 SK는 이전에 발행된 SK를 대체하며, 철회 신청과 관련한 SK는 철회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납세자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거나 미신고된 추가 순자산이 있는 경우, 신고된 순자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또는 적용된 최종 소득세율이 변동된 경우 등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SPPH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소 또는 과다납부 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는 PMK-196의 첨부자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철회신고

납세자는 기존에 SPPH 상 신고된 모든 자산 및 부채에 대해 “Zero Value”를 적용하는 SPPH 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SPPH 철회 신청 이전에 발행된 SK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VDP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다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 TA 법에 따른 200% 가산세 면제 혜택(VDP I 참가자의 경우);
- 2016-2020 년에 대한 과세결과통지서 발행 제외 혜택 (VDP II 참가자의 경우);

- SPPH 에 신고된 데이터 및 정보가 조세범 수사 또는 검찰 공소의 제기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 (VDP I 및 VDP II)

## 신고 이후 관련 사항

### SK 의 수정 또는 취소

DGT 가 조사 중에 이미 발행된 SK 에 잘못된 내용이나 계산 착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기존 SK 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DGT 는 다음의 경우 SK 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SPPH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상이한 경우;
- b. 신고된 자산이 적격 자산이 아닌 경우;
- c. 납세자가 자격 조건에 미달되거나 VDP 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DGT 는 SK 에 명시된 최종 소득세가 과소 납부되었거나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근무일 기준 14 일 이내 과소 납부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DGT 는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SK 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DGT 의 서면확인요청서에 따른 과소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 b. 서면확인요청서에 기재한 대로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 c. 서면확인요청서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 d. 서면확인요청서에 회신하였으나 회신한 내역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SK 가 취소되면 납세자는 VDP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따라 상기에 설명된 조세혜택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K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발생한 과다납부세액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 또는 이월납부(overbooking)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보유 기간 신고

VDP에 따라 신고된 국내 자산 및 국외로 송환된 자산은 SK 발행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내 최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 자산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를 통하여 반드시 송환되어야 합니다.

## 적격 투자에 대한 규정

### 적격 투자 범위

PMK-196은 다음과 같이 적격 투자의 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업 활동

해당 활동에 대한 투자 방식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 설립 또는,
- 기업공개 지분 참여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권리증서 발행

천연 자원의 가공은 원자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원자재를 가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 부문은 재무부가 결정합니다.

b. 국채 증권의 경우(*Surat Berharga Negara/SBN*)

SBN에 대한 투자는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사모의 형태로 증권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주거래은행/증권사가 DGT에 보고하는 근거로 사용할 SK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자산이 외화표시 자산인 경우 SBN을 IDR 또는 USD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자산이 IDR 가액으로 표기된 경우 SBN 구매는 IDR로만 가능합니다.

### 적격 투자 시행 Placement of eligible investment

적격 투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시기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5년의 보유 기간은 SK에 명시된 명목 자금이 완전히 투자된 때로부터 산정되나, 최대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2023년 9월 30일 이후 투자 자산에 대한 5년 유지기간은 2023년 9월 30일부터 기간 계산을 위해 고려됩니다.

### 적격 투자자산 간 교환거래

납세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중 적격 투자자산 간 교환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a. 적격 자산 간 교환이 SK에 명시된 명목 자금이 완전히 투자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거나, 자산이 2023년 9월 30일까지 완전히 투자되지 않은 경우 2023년 9월 30일부터 또는 이후 이루어진 경우



- b. 투자기간 중 최대 두 번의 교환 및 일 역년 기간 중 최대 한번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c. 종전 투자의 철회 및 신규 투자 시행의 시간 차이가 5년 기간에 대한 계산을 늦출 수 있으나 유보 기간은 최대 2년까지임

### 자산 송환 또는 적격투자의 실패

자산 송환이 실행되지 않거나 적격 투자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 HPP Law에 따라 2022년 최종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DGT는 이와 관련하여 경고문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고문을 수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14일 이내 DGT에 확인자료를 송부하거나 추가 최종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응하지 않는 경우, DGT는 HPP Law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자진신고에 비해 가중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SKPKB를 발행할 수 있으며, SKPKB는 투자유지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실행 신고서**

적격투자 대상 납세자 또는 자산 송환이 요구되는 납세자의 경우 DGT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실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연도 직전연도 말 기준 요건을 따릅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 1기 보고서 제출 기한 - 2022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말일까지;
- 이후 보고서 제출 기한 - 2023년 및 이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말일까지

### **신고 이후 장부기장**

#### 자산의 인식

SPPH 에 신고된 순자산 가치는 장부기장 요건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 대차대조표 상 추가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SPPH 에 따라 새로 신고된 자산 및 부채는 SK 날짜에 따라 신규 자산 및 부채로 처리되고 2022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됩니다.

####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형태로 SPPH 에 신고된 추가 자산은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고,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VDP 적용 관련 조세 분쟁**

VDP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조세법원에 제기된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SKPKB 관련 법적 절차는 KUP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mailto: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mailto: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mailto: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mailto: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mailto: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mailto: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mailto: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mailto:hendra.lie@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mailto: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mailto: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mailto:hisni.jesic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mailto: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mailto: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mailto:hyang.augustian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mailto:soeryo.adji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mailto: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mailto:kianwei.chong@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mailto:sujadi.lee@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mailto: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mailto: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mailto: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mailto: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mailto:mardianto.mardianto@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mailto:sutrisno.ali@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mailto: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mailto: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mailto: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mailto: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mailto:marlina.kamal@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mailto: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mailto:ay.tjh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mailto:nicholas.sugi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mailto: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mailto: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mailto:nikolas.handradj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mailto: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mailto: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mailto:oki.octabiyan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mailto: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mailto: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mailto:omar.abdulkadir@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mailto: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mailto: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mailto:otto.sumaryo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mailto: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mailto: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2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